

[수익자총회 의결내용]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벌테마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1.펀드명: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벌테마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2.총회일자: 2009년 07월 01일

3.의안내용: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.

4.의결결과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5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 (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)이 충족되지 못 함에 따라, 동법 제188조 제7항에 의거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계획임

[수익자총회 의결내용] 도이치 DWS 프리미어 넥스트이머징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1.펀드명: 도이치 DWS 프리미어 넥스트이머징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2.총회일자: 2009년 07월 01일

3.의안내용: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.

4.의결결과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5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 (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)이 충족되지 못 함에 따라, 동법 제188조 제7항에 의거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계획임

[수익자총회 의결내용] 도이치 DWS 코리아 단기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)

1.펀드명: 도이치 DWS 코리아 단기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)

2.총회일자: 2009년 07월 01일

3.의안내용: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.

4.의결결과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5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 (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)이 충족되지 못 함에 따라, 동법 제188조 제7항에 의거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계획임

[수익자총회 의결내용] 도이치 DWS 프리미어 더블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

1.펀드명: 도이치 DWS 프리미어 더블드래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혼합)

2.총회일자: 2009년 07월 01일

3.의안내용: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.

4.의결결과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5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 (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)이 충족되지 못 함에 따라, 동법 제188조 제7항에 의거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계획임

[수익자총회 의결내용] 도이치 DWS 프리미어 브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- 1.펀드명: 도이치 DWS 프리미어 브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- 2.총회일자: 2009년 07월 01일
- 3.의안내용: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.
- 4.의결결과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5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 (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)이 충족되지 못 함에 따라, 동법 제188조 제7항에 의거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계획임

[수익자총회 의결내용] 도이치 DWS 프리미어 브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
- 1.펀드명: 도이치 DWS 프리미어 브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2.총회일자: 2009년 07월 01일
- 3.의안내용: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.
- 4.의결결과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5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 (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)이 충족되지 못 함에 따라, 동법 제188조 제7항에 의거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계획임

[수익자총회 의결내용] 도이치 DWS 프리미어 브릭스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- 1.펀드명: 도이치 DWS 프리미어 브릭스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- 2.총회일자: 2009년 07월 01일
- 3.의안내용: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.
- 4.의결결과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5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 (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)이 충족되지 못 함에 따라, 동법 제188조 제7항에 의거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계획임

[수익자총회 의결내용] 도이치 DWS 프리미어 아시아50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- 1.펀드명: 도이치 DWS 프리미어 아시아50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- 2.총회일자: 2009년 07월 01일
- 3.의안내용: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.
- 4.의결결과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5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 (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)이 충족되지 못 함에 따라, 동법 제188조 제7항에 의거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계획임

[수익자총회 의결내용]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지니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- 1.펀드명: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지니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- 2.총회일자: 2009년 07월 01일

3.의안내용: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.

4.의결결과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5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 (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)이 충족되지 못 함에 따라, 동법 제188조 제7항에 의거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계획임

[수익자총회 의결내용] 도이치 DWS 프리미어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1.펀드명: 도이치 DWS 프리미어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2.총회일자: 2009년 07월 01일

3.의안내용: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.

4.의결결과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5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 (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)이 충족되지 못 함에 따라, 동법 제188조 제7항에 의거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계획임

[수익자총회 의결내용] 도이치 글로벌테마 혼합주식투자신탁 자 1호

1.펀드명: 도이치 글로벌테마 혼합주식투자신탁 자 1호

2.총회일자: 2009년 07월 01일

3.의안내용: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.

4.의결결과 :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71조 제2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 (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)이 충족되지 못 함에 따라, 동법 제72조에 의거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계획임

[수익자총회 의결내용] 도이치 더블드레곤 종류형 주식혼합투자신탁 자 1호-FS

1.펀드명: 도이치 더블드레곤 종류형 주식혼합투자신탁 자 1호-FS

2.총회일자: 2009년 07월 01일

3.의안내용: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.

4.의결결과 :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71조 제2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 (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)이 충족되지 못 함에 따라, 동법 제72조에 의거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계획임

[수익자총회 의결내용] 도이치 더블드레곤 종류형 채권혼합투자신탁 자 1호

1.펀드명: 도이치 더블드레곤 종류형 채권혼합투자신탁 자 1호

2.총회일자: 2009년 07월 01일

3.의안내용: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.

4.의결결과 :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71조 제2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 (수익증권의 총

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)이 충족되지 못 함에 따라, 동법 제72조에 의거 수익자 총회가 연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계획임

[수익자총회 의결내용] 도이치 더블드레곤 종류형 채권혼합투자신탁 자 1호-FS

1.펀드명: 도이치 더블드레곤 종류형 채권혼합투자신탁 자 1호-FS

2.총회일자: 2009년 07월 01일

3.의안내용: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.

4.의결결과 :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71조 제2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 (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)이 충족되지 못 함에 따라, 동법 제72조에 의거 수익자 총회가 연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계획임

[수익자총회 의결내용] 도이치 아시아 종류형 채권혼합투자신탁 자 1호

1.펀드명: 도이치 아시아 종류형 채권혼합투자신탁 자 1호

2.총회일자: 2009년 07월 01일

3.의안내용: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.

4.의결결과 :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71조 제2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 (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)이 충족되지 못 함에 따라, 동법 제72조에 의거 수익자 총회가 연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계획임

[수익자총회 의결내용] 도이치 아시아 종류형 채권혼합투자신탁 자 2호

1.펀드명: 도이치 아시아 종류형 채권혼합투자신탁 자 2호

2.총회일자: 2009년 07월 01일

3.의안내용: 당사가 해외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의 신탁업자를 현재의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함.

4.의결결과 :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71조 제2항에 의거한 수익자총회 성립요건 (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)이 충족되지 못 함에 따라, 동법 제72조에 의거 수익자 총회가 연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계획임